



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



수 신 사업장 대표이사
(경 유) 보건업무 담당자
제 목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안내

1. 귀 사업장의 무재해와 안전을 기원합니다.
2.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(보건조치)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12호(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)에 근거하여 해당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.
3. 우리 협회에서는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으니,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하여 관련법규 준수 및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실시시기

최초평가	- 사업장 신설, 사업의 개시 등 최초 실시 -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[대상:전체 작업]
정기평가	- 최초평가 후 매3년마다 실시[대상:전체 작업]
수시평가 (사유 발생 시)	-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-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·설비도입 -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량, 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 등

붙임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리플릿 1부. 끝.

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장

기안자 선임차장 03/30 이만섭 지회장 03/31 강종현

협조자 차장 03/31 양재영 부장 03/31 고영태

시행 전북안전컨설팅부-204 (2026. 3. 31.) 접수 ()

우 5484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가 37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(팔복동가) 별관층 / <https://www.safety.or.kr>

전화 063-212-4022 / 팩스 0507-351-7040 / 이메일 20000seob@safety.or.kr / 공개